

[별표 10의2] <개정 2000.4.18>

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

등 별	지 급 대 상	월 지 급 액
갑 중	각 공장에서 항공기·함정 또는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·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	26,000원 이하
을 중	가. 각 공장에서 항공기·함정 또는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·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. [별표 9]의 2. 방역·보건 및 수의부문에서의 갑종란중 (가) 및 동표의 12. 각 부문에서의 을종란중 (가)·(나)·(다) 또는 (마)에 해당하는 자 다.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	20,000원 이하

비고 :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